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에 정보기술시스템의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포함 의무화 등〉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953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에 정보기술시스템의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포함 의무화 등 ...	2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난 피해 지원 범위에 정보시스템의 마비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포함	1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12. 5.
3. 회부연월일 : 2025. 12.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망이 장기간 마비되면서 행정·재난·보건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서비스가 멈추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함.

이는 국가 전산망 관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분산·이중화 체계가 미흡하며, 실시간 감시와 자동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또한 국민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한 경우 수립하도록 한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에 해당 국가핵심기반이 정보기술시스템 등인 경우에는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 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의 강력한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기술시스템의 마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핵심 정보기술시스템 등의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26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에 정보기술시스템의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포함 의무화 등

개정안은 국가핵심기반 중 정보기술시스템 등에 대하여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에 포함하도록 의무화(안 제26조의2제1항 후단 신설)하고, 국가핵심기반의 이상 징후를 자동 감지하여 국가재난 안전통신망 등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6조의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① ----- ----- ----- ----- ----- ----- ----- 이 경우 국가핵심기반 중 정보기술시스템 등에 대하여는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② · ③ (생략) <u><신설></u>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 반의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감지 하여 이를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등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운 영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의미하는데¹⁾, 2025년 5월 기준 11개 분야에서 총 368개소의 시설 등이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되어 있음.

[국가핵심기반 지정 현황(2025. 5월 기준)]

(단위 : 개소,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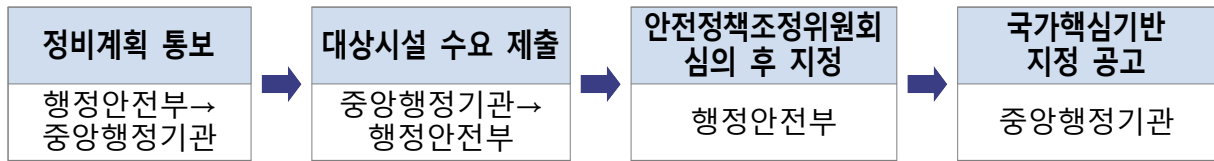
분야	지정 시설 등	관리기관 수
계	368	146
에너지	50	15
정보통신	27	11
교통수송	62	52
금융	8	8
보건의료	29	11
원자력	42	1
환경	6	6
식용수	98	23
정부중요시설	13	7
공동구	28	11
문화재	5	1

(자료 : 행정안전부)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국가핵심기반 지정 절차]



국가핵심기반 지정·관리제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제도 운영을 총괄하며, 11개 지정·관리 분야별로 해당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주관기관’으로서 분야별 운영총괄업무를 담당하고, 368개소의 시설 등에 대해서는 각 개소별로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개소별 운영·관리를 담당 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핵심기반 지정·관리 제도 업무 체계]

행정안전부	주관기관	관리기관
제도운영 총괄	지정분야별 운영총괄	지정 시설별 운영·관리
국가핵심기반 신규지정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상정	국가핵심기반 신규지정 협의	시설별 보호계획 수립·시행 ①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수립지침 통보	지정분야별 관리기관(지정시설)의 보호계획 관리	②자체방호 ③정보통신보호 ④위기관리매뉴얼
관리실태 점검, 재난관리 평가 등 (확인점검·평가실시)	관리기관 관리실태 점검 및 평가실시 (자체점검·평가실시)	⑤상황관리 ⑥교육·훈련 ⑦보호자원관리 등

(자료 : 행정안전부)

2025년 9월 26일, 정보통신 분야에서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망이 장기간 마비되면서 행정·재난·보건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서비스가 멈추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국민 피해가 확산·장기화된 배경으로 국가 전산망 관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분산·이중화 체계가 미흡하며, 실시간 감시와 자동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시각이 있음.

[정보통신 분야 국가핵심기반 27개소 지정 현황(2025. 5월)]

구 분	시 설 명	소재지	관리기관	지정일자
통신망	KT 해화국사	서울시 종로구	KT	2007.9.17.
통신망	KT 용인교환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KT	2007.9.17.
통신망	KT 전국망관리센터	경기도 과천시	KT	2007.9.17.
통신망	해저케이블육양국	부산시 해운대구	KT	2007.9.17.
통신망	KT 구로국사	서울시 관악구	KT	2019.7.8.
통신망	KT 문화국사	대전시 중구	KT	2019.7.8.
통신망	KT 거제해저케이블육양국	경남 거제시	KT	2019.7.8.
통신망	LGU+ 종합연구소	대전시 유성구	(주)LG 유플러스	2007.9.17.
통신망	LGU+상암교환국	서울시 마포구	(주)LG 유플러스	2011.1.20.
통신망	LGU+ 대전오류국사	대전시 중구	(주)LG 유플러스	2019.7.8.
통신망	LGU+ 안양국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주)LG 유플러스	2019.7.8.
통신망	LGU+ 마곡국사	서울시 강서구	(주)LG 유플러스	2019.7.8.
통신망	SK브로드밴드동작종합정보센터	서울시 동작구	하나로산업개발	2007.9.17.
통신망	SKT 분당사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SK telecom	2007.9.17.
통신망	SKT 보라매사옥	서울시 관악구	(주)SK telecom	2007.9.17.
통신망	SKT 둔산사옥	대전시 서구	(주)SK telecom	2007.9.17.
통신망	SKT 성수사옥	서울시 성동구	(주)SK telecom	2019.7.8.
통신망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	대구 수성구	행정안전부	2023.1.13.
전산망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시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007.9.17.
전산망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광주 서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011.1.20.
전산망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대구 동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024.2.29.
전산망	국가정보통신망	대전시 유성구 서울시 종로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007.9.17.
전산망	우정사업정보센터	전남 나주시	우정사업정보센터	2007.9.17.
전산망	고용24전산망	충남 음성군	한국고용정보원	2007.9.17.
전산망	국민건강보험정보시스템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9.13.
전산망	국민연금정보시스템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2017.4.5.
전산망	산재보험정보시스템	울산시 중구	근로복지공단	2017.4.5.

(자료 : 행정안전부)

이에 개정안은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한 경우 수립하도록 한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에 해당 국가핵심기반이 정보기술시스템 등인 경우에는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 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의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핵심기반의 이상 징후를 자동 감지하여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등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가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가핵심기반 중 정보기술시스템 등에 대하여 서버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보호조치를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안 제26조의2제1항 후단)과 관련하여, 현재 발의되어 있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안 제2213477호)를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동 법률안은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행정기관등의 장²⁾에게

2)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행정기관”이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중앙사무관장기관”이란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법원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

통보하는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에 개정안과 같이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안 제2213477호)

구 분	내 용
발의연월일	2025.10. 2.
제안이유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 등 대국민서비스를 포함한 647개 업무시스템이 가동중단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함. 시스템 이중화 및 이원화가 미비된 상황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장애 예방·대응 및 복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때 이중화 및 이원화 등과 관련한 조치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 작성시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해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56조의2 제1항제4호). 나.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해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6조의2제5항).

개정안과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일정한 계획 작성의 전제가 되는 수립지침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³⁾, 두 법률안 모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의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각 법률에 규정하려는 취지이나, 개정안은 해당 내용을 계획에 직접 반영하려는 것인 반면, 「전자정부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수립지침에 동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비교]

구 분	개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영하려는 내용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	
관련 계획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반영 대상	국가핵심기반 중 정보기술시스템	정보시스템
반영 방식	수립지침 → <u>보호계획</u>	<u>수립지침</u> → 장애관리계획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행정기관 정보시스템의 이중화·이원화와 관련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안과 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국가핵심기반 중 정보기술시스템과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기관 정보시스템의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가핵심기반(정보기술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상 정보시스템 비교]

구분	국가핵심기반(정보기술시스템)	「전자정부법」 상 정보시스템
근거 법률	재난안전법 제3조(정의) 12호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13호
정의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 ※ 정보기술시스템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없음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
지정 대상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관리 목적	재난·위기 사회적 위기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정부의 핵심기능 유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연계
지정 대상	국가 핵심기능 유지와 직결된 시스템 - 동일 지정시설 내에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자산 등을 모두 포함	행정,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전반 - 업무* 단위로 관리 * 정부24, 나라장터 등 고유기능 수행을 위해 구축한 전산시스템(집합체)
지정 예시 (고용24)	정보통신분야 국가핵심기반으로 하고 시설(데이터센터 등), 설비·장비, 운영 인력, 자원(정보시스템 등) 등 전반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시행	고용24 전산시스템 및 관련 설비·장비 관리

(자료 : 행정안전부)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소관 분야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작성의 지침이 되는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수립지침」 중 정보통신 분야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이버공격·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계획’ 수립지침으로 ‘망 이원화·이중화’를 포함하고 있음⁴⁾.

4) 관련 내용은 16페이지 참고

그러나, 수립지침이 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작성 시 실제적인 구속력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과 같이 서버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보호조치를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에 직접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도록 법률에 상향하는 경우 정보기술시스템 마비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조치를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정보기술시스템은 시설, 자산 등과 함께 국가핵심기반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라는 점, 11개 분야별로 위 구성요소 중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한 구성요소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안에서 반영하려는 내용을 수립지침에 반영하여 각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수립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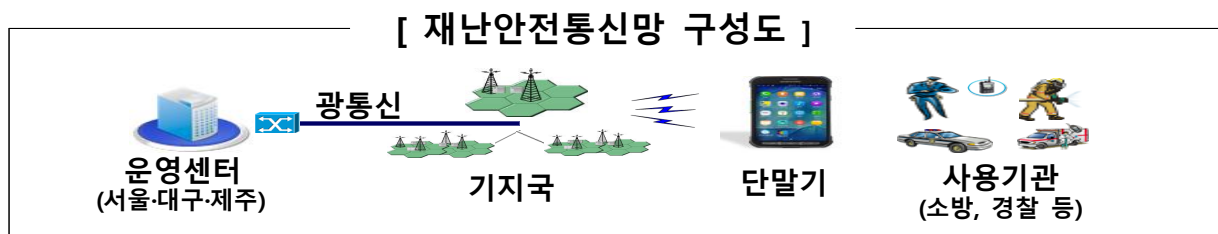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정보기술시스템의 분산·다중화 등 보호조치 강화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관련 세부사항이 시행령과 수립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 명시할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 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임.

둘째, 국가핵심기반의 이상 징후를 자동 감지하여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등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안 제26조의2 제4항)과 관련하여, 현행 재난 대응체계와의 정합성 등 실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핵심기반은 에너지, 정보통신 등 11개 분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해당 분야별 특성의 차이에 따라 이상 징후의 범위도 상이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하기 위한 지표 설정 등을 구체화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일정한 이상 징후 발생 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현행 재난대응체계를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통신망과의 연계에 대해 재난안전통신망이 재난관련기관이 재난관리에 사용하도록 자가(폐쇄)망으로 구축·운영 중인 음성통화 위주의 무선 통신망임을 고려하면, 타 시스템과의 연계는 재난안전통신망의 보안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함.



(자료 : 행정안전부)

추가적으로 행정안전부는 국가핵심기반은 에너지·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가 지정돼 있고 이상 징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모든 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의 구축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존 대응체계와의 정합성 및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난 피해 지원 범위에 정보시스템의 마비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포함

개정안은 정보시스템 등의 마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그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에 이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 ② (생략)	제66조(재난지역 등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u>안정</u>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 ----- ----- ----- <u>안정</u> 등을----- -----. ----- -----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설>	8의2. <u>정보시스템의 마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u>

9. (생략)	<u>피해에 대한 지원</u>
④ ~ ⑦ (생략)	9.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원을 일정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음.

[피해 시설의 복구 등 국가·지자체의 지원 유형(법 제66조제3항 각호)]

-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의 피해에 대한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망이 장기간 마비되면서 행정·재난·보건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한 사례와 같이, 정보시스템의 마비 등으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하고 직접적이라는 특징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정보시스템의 마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피해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법 문언의 명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에서 ‘정보시스템’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개정안과 같이 규정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시스템의 마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따라서, 개정안에 따를 경우 국민 생활과 밀접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마비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시스템의 마비 등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현행법 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지원 항목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현행법 상 재난 유형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정보시스템의 마비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지원하도록 지원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현행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⁵⁾.

제안이유에서 드러난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보시스템의 마비 등’을 현행법에 따른 사회재난의 유형 중 하나인 ‘국가핵심기반 중 정보기술 시스템의 마비 등’으로 보는 경우에도⁶⁾, 해당 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 중 지원하려는 항목을 현재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다른 항목들과 같이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⁷⁾.

한편, 행정안전부는 현행법 제66조는 현행법에 따른 재난 유형에 대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정보 시스템의 마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9

5) 참고로, 사회재난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침해사고를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제2202491호), 자연재난, 사회재난 또는 사이버 공격 등으로 정보통신망의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거나 중단되는 피해를 통신재난으로서 재난 유형에 추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제2212862호)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7) 참고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25.9.26.)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66조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음.

3 보호계획 수립

3.4 중점위험 관리

3.4.1 예방 대책

3.4.1.3 정보통신시설 보호

☐ 중단없는 IT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호계획

구분	기준	현수준	비고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복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추진		
	정밀점검 및 성능진단 수행		
	프로그램 개선 및 성능 최적화		
	시스템 보강 및 노후화 서버 교체 계획 수립		
	비상발전기, UPS 등 비상전력 정기점검		
	데이터센터 등 출입구 직원전용 출입게이트 설치를 통한 보안성 강화		
	통신 인입 맨홀 관리강화(시건장치, 전용CCTV)		
	민간 통신사업자 이원화		
	지진대비 면진시설 설치		
	중단사고 발생시 즉시 대응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실시		
	장애상황 발생을 가정한 모의훈련 실시		

☐ 사이버공격·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계획

구분	기준	현수준	비고
사이버공격 침해사고 예방·복구	전년도 정보통신시설 보호계획 이행점검을 통한 취약점 진단 및 개선조치		
	웹서비스 모의해킹 실시를 통한 개선조치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		
	DDoS공격 대응 모의훈련		
	악성메일 대응 모의훈련		
	새로운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계획		
	망 이원화·이중화		
	전산장비 백업시스템(DR) 원격지 구축		